

마드리드 각서



2020 년 7 월

의 적용 가능성 아프리카의
마드리드 시스템

마드리드 시스템의 아프리카 적용성

비록 마드리드 시스템이 아프리카 지역외의 대다수 국가들(지식재산권 법률의 발전은 비슷한 발전단계에 처해있으며 지식재산권기관들은 모두 선진기술로 데이터 레지스터와 시스템을 관리함)에서는 양호한 적용성을 선보이고 있지만 대다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대한 의뢰성으로 인해 일부 조직들이 일정한 비즈니스 리스크에 면하고 있다.(구체 정도는 관련 사법관리구역에 따라 다름).

포인트 지표

시스템의 유효적 실행을 위해서는 아래의 관건적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1. 국가상표법 혹 지식재산권법에서 국제등록의 유효성과 미실행성을 명확하게 인정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관련 지도적법규를 추가 실행함으로 등록관리기관의 실무자들에게 마드리드 상표 신청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는것이다.
2. 국가지식재산권국은 규정된 제한시간, 즉 12개월~18개월내에 모든 마드리드 상표신청건을 처리, 심사, 발표하는 업무를 엄격히 완성하여야 함과 동시에 세계지식재산권조직에 이의(존재할 경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식재산권국은 유일한 (데이터)상표등록 레지스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그중에는 국가등록상표와 국제등록상표들이 기록되어야 한다.

마드리드 시스템내 아프리카 회원국

마드리드 시스템에 따라 아래의 22개 아프리카 관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알제리 (Algeria), 보츠와나 (Botswana), 이집트 (Egypt), 감비아, 가나 (Ghana), 케냐 (Kenya), 레소토 (Lesotho), 라이베리아 (Liberia), 마다가스카르 (Madagascar), 말라위 (Malawi), 모로코, 모잠비크 (Mosambique), 나미비아 (Namibia), 아프리카지식재산권조직 (OAPI), 상투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Sierra Leone), 수단 (Sudan), 스와질란드 (Swaziland), 튀니지 (Tunisie) 공화국, 잠비아 (Zambia) 와 짐바브웨 (공화국).

미실행성

상기 회원국에서 **다만 4개 나라만** 상술한 포인트 지표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들은 바로 **케냐 (Kenya), 모잠비크 (Mosambique), 모로코 (Morocco), 튀니지 (Tunisie) 공화국**이다.

단, 이런 국가에서도 국제등록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일정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데, 그 원인은 지식재산권기관에는 아직도 수많은 처리대기 업무들이 쌓여있어 제때에 모든 신청을 심사해줄수 없다는 점이다(국제등록 포함). 최근 케냐 (Kenya) 의 지식재산권국은 한부의 리스트를 통해 125개 세계지식재산권조직의 지정한 제한시간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국제등록신청을 공개하였고 제삼자기관은 상표권

침해상황이 존재할 경우 상표등록 레지스터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타 아프리카국가에서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강제적으로 상표권을 집행하는데 여전히 수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에이전트 회사차원에서 우리는 국제상표소유자들이 자신이 모종의 마드리드 시스템내 아프리카 회원국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법적권력을 분명히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상표권 보호 과정에서 이런 국가들로부터 상표권 보호를 받을수 없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외, 우리는 또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先신청제도”** 를 적용하기 때문에 많은 비즈니스 활동중에서 상표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적 법률권력들이 아직 정식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상황을 발견했다. 이런 관할 지역에서는 비즈니스가 사실임을 불문하고 우선 상표를 성공적으로 등록하는 일방이 상표의 실제 소유자로 간주되게 된다. 만약 브랜드소유자가 상술 관할 지역(마드리드 시스템 양호 실행불가)에서 단순하게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상표권을 보장하려고 한다면, 꼭 어느 정도의 리스크에 면하게 될것이다.

전반 상황

국제(마드리드)등록상표는 등록 개시 첫 5년내에 신청/등록에서의 집중 공격받을수 있으며 이런 공격들이 일단 성공하면 상표는 신청/등록 실패, 제한 혹 철수될 수 있으며 기타 국가/지역에서의 상표신청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국제상표등록시스템도 복잡한 승인/소유권구조를 보유한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을수 있기에 모든 국가/지역에서의 등록신청은 모두 동등한 소유권정보가 반영되어야 한다.

결론

비록 마드리드 시스템이 수많은 마드리드 회원국에 고효율·경제적인 상표등록체계를 제공되고 있지만 상술한 원인으로 마드리드 시스템을 실시할 때, 국제등록상표권이 모든 지정구역에서 강제적으로 집행가능한지도 자세히 감안해야 한다.

더 많은 정보는 아래 방식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madrid@adams.africa